

의 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2. 건 명 :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3. 안건요지 : 별첨참조

4. 검토의견 : 별첨참조

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1995년 4월 일

산업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류기



大田廣域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

檢討報告書

1995. 4.

産業建設委員會
専門委員

大田廣域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

檢討報告

이 條例案은 1995年 3月 27日 大田廣域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4年 3月 31日 當委員會에 回附되었음.

1. 提案理由

統合公課金 制度가 '94. 10. 1일 폐止됨에 따라 下水道使用料는 上水道 給水使用料와 納期를 같이 하여 竝記告知徵收하고 있어 下水道法 및 上水道 給水條例가 改正되었기 그동안 二元化로 인한 不合理한 部分을 現 實에 맞게 改正코자 함.

2. 主要骨子

大田廣域市 下水道 使用條例中 “年利 9.6%의 延滯金을 當該 使用料 占用料 其他負擔金에 加算하여 徵收한다”를 “加算金은 納期를 經過한 때로부터 滯納額의 100분의 5를 加算하여 徵收한다”로 改正함. (第21條)

3. 檢討意見

- 今番에 改正코자 하는 下水道 使用料 條例中 改正條例案은 '94年 10月 1日字로 廢止된 統合公課金의 分離施行에 따라 下水道使用料 는 上水道 紿水使用料와 納期를 같이하여 告知 徵收해오고 있으며, '95年 6月까지는 使用料가 完全 電算化되어 處理되고 또한 上水道 紿水條例 및 下水道法이 改正되었기 그동안 二元化로 인한 不合理한 部分을 現實에 맞도록 改正코자 하는 것임.
- 改正 條例의 主要 內容은
그동안 下水道使用料등의 徵收에 따른 納付義務者가 納付期限까지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年利 9.6%의 延滯金을 加算하여 徵收하여 왔으나 이 規定을 納期를 經過한 때로 부터 滯納額의 100분의 5를 加算하여 徵收할수 있도록 改正하는 것으로써
- 關聯法인 下水道法 第38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면, 公共下水道管理廳은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는 바에 따라 加算金을 徵收할 수 있고 이 경우 加算金은 滯納된 金額의 100분의 5에相當하는 金額으로 하며, 指定期限까지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公共下水道 管理廳은 地方稅 滯納處分의 例 의하여 이를 徵收할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어 下水道 使用料 條例의 改正是 妥當하다고 思料가 됨.